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 안 번 호 9135

제안연월일: 2025. 3.

제 안 자: 외교통일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3건의 법률안을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상정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03	한정애의원 등 11인	2024. 11. 14.	
	5836	김건의원 등 15인	2024. 11. 25.	2025. 2. 26.
	6182	박충권의원 등 12인	2024. 12. 3.	

- 나.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 사소위원회(2025. 3. 6.)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2025. 3. 11.)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영어(營漁)·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어·영림 정착 지원을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어업·임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및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제도의 운영을 위해 배치되는 담당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제기되고 있어, 통일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공유재산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 등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학교 부지를 찾아야하는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

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함(안 제17조의3제1항).
- 나.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 다.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농(營農)"을 "영농(營農)[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을 "농업·어업·임업"으로 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업무
- 2.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업무
- 3. 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업무
- 4. 제22조의2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업무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

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중 "사용"을 "사용 및 매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부하거나"를 "대부·매각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매각과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① 통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① ---일부장관은 영농(營農)을 희망 ----영농(營農)[영어(營 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영농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 이하 같다]----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 현장 실습 2. 농업·어업·임업----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4(보호 및 정착지원 업 <신 설> 무 종사자 교육 실시) ① 통일 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북한이 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 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업무 수행 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업무

2.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업무

3. 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

제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사 제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사 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 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북 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 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업	무	

- 4. 제22조의2에 따른 거주지에 서의 신변보호업무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 착지원 업무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 및 매각 등에 관한 특례)

-----<u>대부·매</u>각 <u>하거나</u>----.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 유재산의 대부·매각과 사용・ 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

<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u> <u>령령으로 정한다</u>.